제 15 호
(1997. 3. 28)

發 行 人
趙 鏞 樂

淳昌趙氏宗報

淳昌趙氏大宗會

137-070 서울·瑞草區 瑞草洞 1712-2
東龍빌딩 503號

連絡處
會長 593-5353, 8383
FAX 593-8383

送金口座
국민은행 079-21-0442-691 조용락
농 협 013-02-136312 조용락
우 체 국 013-284-0008954 조용락

새 해 人事

會長 趙 鏞 樂

경애하는 순창조씨 대종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보내고 희망과 의욕에 찬 정축년을 맞이하여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같이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북괴 잠수함의 침투사건,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수사 심판사건 및 국제 경쟁력마저 상실한 경제구조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하였고, 정축년초에 폭발한 한보그룹의 사상최대의 금융비리사건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풍조마저 극대화 시켜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걱정스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정부에서는 금년을 「문화유산의해」로 정하여 선조들의 문화행적을 재발굴하여 이를 소중히 간직코져 하거니와 저는 1997년 2월 1일 부회장 昌善, 사무국장 根植 두분과 함께 대전국립묘지에 가서 우리 순창조씨 문경파(聞慶派)26세, 조용선(족보상 璿善) 할아버지께서 애국지사(愛國志士) 묘역에 안장된 사실을 발견하는 영광을 가졌었습니다.

"애국지사"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순국선열" 다음가는 국가유공자로서 위 조용선옹은 독립운동가로서 건국공로훈장을 받고 작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는 바(자세한 공적은 다음호에 게재) 그외에도 국가유공자가 한두분 더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그 방면에 대한 계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발굴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解說

(전호에서 계속)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허례허식이 아닌 행위에 범위)
법제 4조 1항(허례허식 행위의 금지) 각호 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하여 간소한 범위 안에서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중 하객으로 초청하는 행위
2. 영전이나 묘소에 10개이내, 혼례식장이나 회갑연장에 5개이내의 화환이나 화분 또는 꽃바구니를 진열하는 행위(증여자의 명의를 표시할 수 있다)와 혼례에 있어서 당사자와 그 부모 및 주례가 꽃을 폐용하는 행위
3. 경조 기간중 가정이나 식품 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에서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특1등급호텔 제외)
4. 경사와 관련하여 간소한 주류나 음식물을 접대하는 대신 간소한 답례품을 증여하는 행위

가정의례 준칙

제7조 (장례제식) 사망후 매장완료 또는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제식은 발인제(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와 위령제(무덤 쌓기가 끝난후 그 무덤 앞에서)만을 행하고 그외의 노제 별우제 삼우제의 제식은 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장일)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1조 (상기) 부보,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장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상복등) ①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을 하고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복장으로 하고, 왼쪽 흉부에 상장 또는 흰 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제14조 (부고) 신문에 부고를 기재하는 경우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기제) ① 기제의 대상은 제주로하고 2대 부모, 조부모)
② 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해진 뒤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③기제의 참석자의 범위는 사망자의 지계 자손으로 한다.

제19조 (절사) ① 절사의 대상은 직계 조상으로 한다.
② 절사는 매년 추석절 아침에 종손의 가정에서 지낸다.
③ 절사의 참석자의 범위는 직계 자손으로 한다.

제20조 (연시제) 연시제는 매년 1월 1일 아침에 지낸다. 그 대상, 장소, 참석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제21조 (제수) ①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② 절사(추석)의 경우는 떡(송편)으로, 연시제(설)의 경우는 떡국으로 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3조 (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배래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며 제수는 마련하지 않는다.

이상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칙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기술한 것인바, 국민의 80.1%가 인정하면서도 법규로 규제하는데 대한 반발과 함께 법령의 실효성 약화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제기되는 반면 의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병존함. -끝-

首席副會長 趙洪湜 제공

'96 재경이사회겸 망년회 개최

1996년 12월 6일 18:00에 서울 강남구소재 서초부폐에서 재경이사 및 청년부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망년회가 개최되었다.

1996년 대종회 업무를 총결산하는 조용락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서 만찬을 하며 회원 상호간에 덕담을 나누었다.

2부 순서로는 참석회원 전원이 장기자랑을 하여 푸짐한 상품시상이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돌아오는 새해 정축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괴산 종친회 소식

1996년 12월 24일 개최된 괴산 종친회 대의원회의에서 문광면 송평리에 위치한 은행나무(8세손 趙廉, 文貞公께서 660년전 심음)를 보호하기 위하여 둘레석과 유래비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14세 世球 松靑公 묘소(송평리소재)에는 비석을 다시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비는 찬조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종친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내용 참조)

1. 사 업 비 : 약 12,000,000원
2. 찬 조 금 : 100,000원이상
3. 송금구좌 : 문광우체국 300996-0002161(조창재)
4. 연 락 처 : 회장 조준식 (0446)72-5037
   총무 조창재 (0445)33-0551

〈괴산종친회장 趙傑植 提供〉

特輯 遺蹟探訪 ③

앞서가는 祖上 숭상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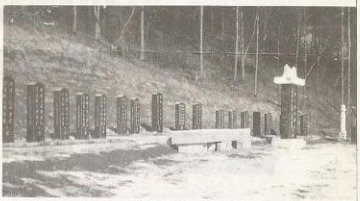

箕城派의 단산소 전경

괴산 칠충사(七忠祠)에 제향되어 있는 일곱분 충신중 17세 趙珩(1584~1661)는 서기 1628년(인조6년) 호서지방에서 일어난 최여헌란을 토평한 공으로 일등공신에 오르고 슬하에 4형제를 두셨다. 위 4형제중 興運과 昌運 두분 선조께서 각각 처음 자리잡은 고장의 이름을 따서 興運의 후손은 池谷派(지곡파), 昌運의 후손은 箕城派(기성파)라고 편의상 통칭하여 왔다.

箕城은 忠淸北道 槐山郡 文光面 玉城里(치재)를 일컬으며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문중 사람은 한분도 없다. 箕城派 일가는 크게 번창하지 못해서 1988년에 발행한 족보상 남자는 70명 내외에 불과하며 더욱이 모두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방으로 헤어져 살아오는 과정에서 조상을 숭상하고 문중을 위하는 일 역시 소홀이하여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비로서 뿌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조상 위하는 마음과 일가간에 친목하는 마음이 남달리 간절한 昌善의 주관으로 鐵壽, 泰植, 泰榮을 앞장세워 전체문중 종인이 힘을 모아 文光面 光德里산 92번지 五馬山기슭 양지 바른 곳에 자파 조상인 18世 昌運의 石碑를 세우고, 19世 誕, 濟, 20世 東英, 東華, 21世 以梅, 以核, 以梓, 22世 重慶, 重祿, 重天, 23世 錫基, 錫爾, 錫官, 錫龜, 24世 誠淳, 鴻淳, 衡淳, 榮淳, 勉淳, 憲淳, 泰淳 등 7代에 걸친 전체선조 22位의 단산소를 설단하고 표석을 건립한후 1995년 12월 2일 유사이래 처음으로 온일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동 시향을 올렸다.

앞으로는 이곳을 기성과 문중의 성지로 삼고 더욱 가꾸어 해마다 전체일가가 일년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 조상에게 제례하고 일가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후손에게 뿌리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기약하였으니 이는 산업화의 물결속에 핵가족화로 뿔뿔히 헤어져 바쁘게 사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의 적절한 일대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副會長(기성파) 趙昌善 提供〉

회원 동정

■ 慶弔事

趙舜基(평택파) 모친사망(2월12일)

■ 移 動

趙文勇(예천파) 국민은행 부산지점 → 서울 이촌동 지점으로

趙尤柱(삼고파 趙洪湜 삼남) 대우건설 대리 → 미국 애틀란타로

一般會費納入現況

조용학(평택) ₩ 10,000	조용화(평택) ₩ 30,000
조용목(평택) ₩ 30,000	조용무(평택) ₩ 10,000
조용규(평택) ₩ 30,000	조용두(평택) ₩ 30,000
조용백(평택) ₩ 30,000	조용철(평택) ₩ 30,000
조용익(평택) ₩ 30,000	조현기(평택) ₩ 10,000
조용근(평택) ₩ 30,000	조용우(평택) ₩ 10,000
조용견(평택) ₩ 30,000	조용문(평택) ₩ 30,000
조원재(평택) ₩ 30,000	조광기(평택) ₩ 30,000
조승기(평택) ₩ 30,000	조병국(평택) ₩ 30,000
조수기(평택) ₩ 30,000	조정기(평택) ₩ 30,000
조일주(평택) ₩ 30,000	조선주(평택) ₩ 30,000
조무연(평택) ₩ 30,000	조병산(평택) ₩ 10,000
조승주(평택) ₩ 30,000	조예주(평택) ₩ 20,000
조남기(평택) ₩ 30,000	조용선(평택) ₩ 30,000
조석기(평택) ₩ 10,000	조붕기(평택) ₩ 20,000
조동식(물송) ₩ 40,000	조영복(문경) ₩ 20,000
조확태(문등) ₩ 30,000	조병진(탑동) ₩ 20,000
조인상(여주) ₩ 30,000	조태철(여주) ₩ 40,000
조언상(여주) ₩ 20,000	조길상(여주) ₩ 40,000
조병관(여주) ₩ 40,000	조병춘(여주) ₩ 50,000
조현준(여주) ₩ 50,000	조병인(지곡) ₩100,000
조용숙(미상) ₩ 55,000	조용선(미상) ₩ 55,000
조건식(미상) ₩ 20,000	이쌍희(미상) ₩ 10,000

기금 찬조금 납입 현황

조용락 회 장	₩ 4,000,000
조창선 부회장	₩ 1,000,000
조영수 고문	₩ 1,000,000
평택파	₩ 2,000,000
청주파	₩ 1,000,000
조강선(진천파)	₩ 200,000
조일선(진천파)	₩ 200,000
조태은(진천파)	₩ 200,000
조병만(서산파)	₩ 350,000
계	₩ 9,950,000

案 內

慶弔事와 住所이동사항의 연락과 宗報의 원고제출 문의 등은 다음 연락처로!

회 장	(02)593-5353
수석부회장	(0343)94-7208
사무 국장	(02)933-3332
총무 부장	(02)851-3981
재무 부장	(02)775-8814